

중경 02 - 8

## 최근 중국 무역제도의 변화

(2002. 4. 4)

해외경제연구소  
국 별 조 사 실

### □ 중국무역제도의 특징

- 정부 주도의 수출입 관리체제
  - 중국은 현재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기업에만 무역업을 허가해주는 지정경영제(指定經營制) 시행
    - ⇒ 무역업 허가가 없는 기업은 대외무역공사를 통해 수출입 거래 가능
  
-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투자인가 취득과 함께 자동으로 대외무역권이 부여됨
  - 다만, 생산활동과 관련된 원·부자재와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수출입할 수 있는 제한적인 대외무역권으로 한정됨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존재
  - 관세율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관세율 부과(평균12%)
    - 태국 5%, 칠레 7%등
  - 수출입 허가 품목 지정고시로 엄격한 관리체제 유지
    - 수입허가제와 수입쿼터 관리 품목이 63종 618개 품목에 달해 진입제한

## □ 최근 중국무역제도의 변화

### ○ 수입관세율 인하 지속

- 중국의 관세율은 39.9%('92년 말) → 23%('96. 4) → 17%('97. 10) → 15.3%('01. 1) → 12%('02. 1)로 꾸준히 인하.
- '02. 1월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각 산업별 평균관세율은 공산품 11.6%, 농산품 15.8%, 수산품 14.3%, 방직품 및 의류 17.6%, 화학제품 7.9%, 교통운반구 17.4%, 기계 9.6%, 전자제품 10.7% 등임
- WTO 가입 협약에 따라 중국은 2005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수준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규제 완화

- 2004년부터 내·외자기업 모두 대외무역권 취득 요건의 간소화로 더 이상 수출실적, 외환수지 균형, 은행 신용상황, 이익 실현 여부 등의 요건 불필요.
- 2006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된 생산활동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도 대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됨.
- 대외무역권의 허용과 함께 내수시장 진입도 가능하게 되는데, WTO 가입 후 3년이면 일반적인 제품은 국내 유통 가능
  - 다만, 원유·석유제품·화학비료·식량·면화·식물유·설탕·담배 등의 8가지 품목은 정부의 국영 대외무역공사가 여전히 독점적으로 대외무역권을 행사하게 됨.
- 2004년부터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외무역권이 부여됨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은 도소매 등의 유통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게 됨
- 다만, 투자 비준시 인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 활동이 가능한 제한적인 대외무역권임

### ○ 비관세 장벽 완화

- 수입 Quota 관리는 국내 산업 발전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실시
- 주요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적정 수입은 필요하나 대량 수입시에 국내 산업 및 외화 보유에 영향을 주는 상품: 기계와 전자, 대형 플랜트 설비 및 기술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상품 : 원유, 석유제품, 양모, 양식, 비료, 농약 등임
- 수입허가증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대상은 12개 종류의 HS 8자리 기준으로 170개 품목('02. 1)으로, 석유제품, 천연고무, 자동차타이어, CD생산 설비, 자동차 및 주요부품, 오토바이 및 주요부품, 카메라 및 몸체, 기중기 및 샷시, 제조가 용이한 유독 화학품, 화학무기 원료, 오존파괴물질 등임
-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하여 1999년 9월 식물유, 천연고무, 양모, 설탕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일시 정지하였고, 2001년 1월 15일부터는 22개 품목(설원용 자동차, 골프장용 자동차, 세탁기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폐지하였음
- 현재 수입 쿼터 및 수입 허가증 등으로 수량 규제를 받고 있는 품

목에 대해서 향후 단계별로 철폐될 예정

- 다만 자국산업의 보호측면에서 WTO 가입 후에도 여전히 비관세 장벽을 받을 품목이 전체의 2%인 150개 품목에 이를 전망이다

#### □ 그러나 새로운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 높음

- WTO 가입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입 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위생'과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안전검사와 환경보호 검사 등과 같은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수출용의 품질·위생 관리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의 : 국별조사실 부부장 김주영 ☎ 3779-6647, jkim@koreaexim.go.kr 차 장 전선준 ☎ 3779-6650, jsjun@koreaexim.go.kr 대 리 이지언 ☎ 3779-6655, jeyi@koreaexim.go.kr
---